

의안번호	2209216
의 퇴 인	윤준병 의원
회 답 일	2025. 3. 28.
추 계 번 호	25E177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,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등
일몰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2027년 14억원 등 2027~2031년 5년간 70억원(연평균 14억원)으로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일몰 연장(안 제91조의20)	-14	-14	-14	-14	-14	-70	-14

주: 현행 일몰기한이 2025년까지이므로 일몰기한 5년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7~2031년 동안 발생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1조의20제1항 (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)	○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연장 - (현행) '25.12.31. → (개정안) '30.12.31.	-
2	안 제91조의22제1항 (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)	○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연장 - (현행) '25.12.31. → (개정안) '30.12.31.	-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91조의20제1항 (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)	○	추계
2	안 제91조의22제1항 (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)	×	추계곤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
 - 현행 일몰 적용기한은 2025년까지이므로 적용기한 5년 연장에 따른 세수 효과는 2027~2031년 동안 발생
-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조세지출예산서 상의 조세지출액(2024년 전망치)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향후 해당 저축에 가입한 사람의 수, 납입금액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2024년 전망치가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
 - 조세지출예산서의 2024년 전망치는 2024년 상반기 신고 실적(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) 등이 반영된 잠정치이므로, 2024년 전망치를 추계에 활용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감면 실적

-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장기펀드 가입 청년을 대상으로 납입금액(연600만원 한도)의 40%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
 - 총급여 5,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,800만원 이하인 만19~34세 청년 대상(단,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)
- 2023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조세지출 실적은 10억원이며, 2024년은 14억원으로 전망됨
 - 2024년 전망치는 2024년 상반기 신고 실적 등이 반영된 잠정치

[표 2]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조세지출액 규모

(단위: 억원)

	2022	2023	2024 ^P
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(제91조의20)	신설	10	14

주: 1. 2024년은 정부 전망치

자료: 정부, 「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」

(2) 추계 방법

-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각 항목의 2024년 조세지출 규모가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- 향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사람의 수, 납입금액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2024년 전망치가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
 - 조세지출예산서의 2024년 전망치는 2024년 상반기 신고실적 등이 반영된 잠정치이므로, 2024년 전망치를 추계에 활용

(3) 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2027년 14억원 등 2027~2031년 5년간 70억원(연평균 14억원)으로 예상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일몰 연장(안 제91조의20)	-14	-14	-14	-14	-14	-70	-14

주: 현행 일몰기한이 2025년까지이므로 일몰기한 5년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7~2031년 동안 발생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성은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성은	02-6788-4668	ixsepark@assembly.go.kr